

2023년도 제2차 재무경영위원회 회의록

I 개최개요

- 일 시 : 2023. 3. 23.(목) 15:00~16:05
- 장 소 : 1호관 507호 영상회의실
- 참석현황 : 재적위원 20명 중 참석 14명, 불참 6명
 - 참석위원(14명)
 - 위원 강현철, 위원 박종돈, 위원 서정현, 위원 이정두, 위원 김동원, 위원 임조순, 위원 김경선, 위원 이광호, 위원 최수봉, 위원 김동배, 위원 조길수, 위원 박일충, 위원 송인석, 위원 이현구
 - 불참위원(6명)
 - 위원 최병조, 위원 이영애, 위원 김규원, 위원 한민섭, 위원 이주호, 위원 조병관

II 회의결과

- 제5호 심의안건 : 인천대학교 교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
일부개정지침안

○ 안건요지[보고자:교무과장]

- 제안사유
 - 가. 「공무원 보수규정」 중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및 관련 조항 개정(2023.1.6.)에 따라 봉급 및 근속가봉 인상액을 본 지침에 반영하고자 함.
 - 2023년 국립대학 교원 봉급 인상액 적용(인상률 1.7%)
 - 근속가봉 인상액: 7만5800원(기존 7만4500원)

「공무원 보수규정」 제30조의2

- 「공무원 보수규정」 부칙 제2조에 의거 실제 급여 인상 적용은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하며,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임.

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.

※ 2023년도 인천대학교 교직원 급여 지급 안내 【총무과-234호(2023.1.9.)】

- 나. 「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」개정(2022.7.8.자)에 따른 변경 · 신설된 전공의 주임교수 보직수당 지급을 위해 보직수당 지급대상표에 반영하고자 함.
- 다. 2022.11.24.자 LINC사업단이 대학 내 부속기관으로 설치됨에 따라 보직수당 지급대상표에 반영하고자 함.
 - LINC사업단장은 교무위원회으로 임명하여, 사업수행을 위해 대학 내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지위 부여
(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,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)
- 주요내용
 - 가. [별표1]의 교원 봉급표 개정
 - 교원 호봉별 봉급표 인상액 및 근속가봉 인상액 반영
 - 나. [별표6]의 보직수당 지급대상표 개정
 - 부속기관장 '가' 급에 LINC사업단장 추가
 - 전공주임교수-대학원에서 교수설계 · 교육미디어전공, 교육과정 · 수업컨설팅전공을 삭제하고 수업설계 · 수업컨설팅전공, 평생 · 직업교육전공 및 아동예술심리치료전공 추가
- 관계법령
 - 가. 「공무원 보수규정」
 - 나.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
 - 다. 「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」
 - 라. 「인천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」

○ 심의결과 : 추가 질의 및 안건 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됨.

□ 제6호 심의안건 : 인천대학교 조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안

○ 안건요지[보고자:교무과장]

- 제안사유
 - 가. 「공무원 보수규정」중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및 관련 조항 개정(2023.1.6.)에 따라 봉급 인상액을 본 지침에 반영하고자 함.
 - 별표12 국립대학 교원의 봉급표 (전년대비 1.7%인상)
 -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31,500원을 뺀 금액
 - 나. 「공무원 보수규정」부칙 제2조에 의거 실제 급여 인상 적용은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하며,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임.

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.

 - 2023년도 인천대학교 교직원 급여 지급 안내 【총무팀-234(2023.01.09.)호】

- 주요내용
 - 가. [별표1]의 조교 봉급표 개정
 - 조교 호봉별 봉급표 인상액 반영

○ 심의결과 : 추가 질의 및 안건 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됨.

□ 제7호 심의안건 : 인천대학교 임직원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○ 안건요지[보고자:총무과장]

- 제안사유
 - 가. 공직유관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위 행위 등으로 해임되거나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, 퇴직금의 일부를 삭감토록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- 주요내용
 - 가. 제33조 뒤에 “제7장 임원의 퇴직금” 삽입
 - 나. 제34조(해임 등에 따른 퇴직금의 제한) 신설

○ 심의결과 : 추가 질의 및 안건 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됨.

□ 제8호 심의안건 : 인천대학교 공용차량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○ 안건요지[보고자:총무과장]

- 제안사유
 - 가. 인천대학교 공용차량 관리규정의 전용차량 운행 범위를 개정하여 교육부 감사지적사항을 해소하고 차량제공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.
- 주요내용
 - 가. 전용차량 배정대상자에 이사장 삭제 및 감사(상근) 추가
- 관계법령
 - 가. 인천대학교 공용차량 관리 규정 [붙임1]

○ 주요 질의 및 응답

- 교육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내용과 타 국립대학의 현황 설명을 요청함.
 - ⇒ 교육부 감사시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근 감사에게 차량을 배정한 것이 지적사항이며, 타 국립대는 감사가 없고 법인대학인 서울대와 저희 대학만 감사가 있음.
- 이사장님의 활동에 따라 규정을 바꿀 수 없으니 지원기준을 정하길 요청함.
 - ⇒ 법률과 정관에 이사장은 비상근, 감사는 상근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, 법의 취지에 따라 법인대학으로 상근 감사에게 공용 차량을 지원하고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.

○ 심의결과 : 안건 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됨.

※ 제9호, 제10호, 제11호 심의안건 일괄상정

□ 제9호 심의안건 : 인천대학교 시설물 관리 운영 규정 폐지안

○ 안건요지[보고자:시설관리팀장 직무대리]

- 제안사유
 - 가. 대학 규정 정비 추진에 따라 「인천대학교 시설물 관리 운영 규정」을 폐지하고 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단기 사용허가에 관하여 따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- 주요내용
 - 가. 「인천대학교 시설물 관리 운영 규정」 전부 삭제

○ 심의결과 : 추가 질의 및 안건 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됨.

□ 제10호 심의안건 : 인천대학교 시설물 관리 운영 지침

제정지침안

○ 안건요지[보고자:시설관리팀장 직무대리]

- 제안사유
 - 가. 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단기 사용허가에 관하여 따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「인천대학교 시설물 관리 운영 지침」으로 제정하고자 함
- 주요내용
 - 가. 인천대학교 규정 정비 추진에 따라 「인천대학교 시설물 관리 운영 규정」 폐지와 동시에 「인천대학교 시설물 관리운영 지침」제정
 - 나. 인천대학교 시설물 관리운영과 시설물의 단기 사용허가 성격에 맞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혈행화

○ 주요 질의 및 응답

- 규정을 지침화 하면서 추가 및 삭제내용이 있는지 설명을 요청함.
 - ⇒ 용어정리, 시설물관리운영위원회, 사용제한, 사전협의, 사후통보 등의 내용이 삭제됨.
- 규정과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심의 진행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함.
 - ⇒ 규정에 총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으면 지침을 제정하게 되고, 재정이 수반되는 경우 재무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으며, 교육 연구에 관한 사항은 지침은 교육연구위원회에서, 규정은 평의원회의 심의를 하게 되어있음.

○ 심의결과 : 안건 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됨.

□ 제11호 심의안건 : 인천대학교 자산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

○ 안건요지[보고자:재무회계팀장]

- 제안사유
 - 가. 대학 규정 정비 추진에 따라 「인천대학교 자산관리 규정」 개정 하고자 함.
- 주요내용
 - 가. 「인천대학교 시설물 관리 운영 규정」 폐지되고, 「인천대학교 시설물 관리 운영 지침」이 제정됨에 따라 「인천대학교 자산관리 규정」을 일부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.

○ 심의결과 : 추가 질의 및 안건 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됨.

□ 제12호 심의안건 : 재단법인 아이앤유파트너스 정관 제정안

○ 안건요지[보고자:교무과장]

- 제안사유
 - 가. 우리대학의 창업지원 역량확대 및 창업지원 조직의 투자기능 강화
 - 나. 창업지원 사업영역 확대로 대학·창업기업 간의 이익공유 기반 조성
 - 다. 창업기획자(액셀러레이터) 설립 및 대학투자펀드 운영으로 교내 창업 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대학의 재정확보에 기여
- 주요내용
 - 가. 창업기획자(액셀러레이터) 설립을 위한 법인 정관
 - 나. 이사회 구성원
 - 구성원 : 이사 5명(대표이사 포함), 감사 1명
 - 당연직 이사 : 창업지원단장
 - 이사 추천 요건
 - ① 벤처투자 전문가 ② 창업 전문가 ③ 기타 이사의 직무 수행이 적합한 자
 -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출

○ 주요 질의 및 응답

- 비영리법인에서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함.
 - ⇒ 비영리법인에서도 외부 사업을 유치해서 할수 있으며,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음. 해당 수익은 법인으로 귀속되며 수익은 발전기금 납부 등을 고려하고 있음.
- 법인정관을 심의하는 주된 목적, 법인에 대한 인천대의 투자금과 투자수익 발생 시 처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.
 - ⇒ 창업지원단 유보금액은 2억 5천만원이 있으며, 5천만원은 기본재산이며 2억원으로 투자활동을 추진할 계획임. 창업지원과 관련한 많은 사업이 있는데 법인 유무에 따른 가점이 달라지게 되고, 보고 차원으로 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게 된 것임.
 - ↳ 법인 설립 후 투자금 발생시 재무경영위원회의 승인 또는 심의를 통해 진행할 것을 요청함.
- 제14조와 제17조의 규정내용중 일부가 관련 조항과 문맥수정을 요청하고, 이사회 심의 이후 차기 재무경영위원회에서 최종 정관을 보고를 요청함.

○ 심의결과 : 안건 이의 없음으로 수정가결 됨.

당 초	수 정
제14조(직원의 임면) ① 법인의 직원은 이사 회의 의결을 거친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임면할 수 있다. 제17조(대표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무대행) ①~④ (생략) ⑤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대표이사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	제14조(직원의 임면) ① 법인의 직원은 이사 회의 의결을 거친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 <u>가</u> 임면할 수 있다. 제17조(대표이사 및 대표이사의 직무대행) ①~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제3항의</u> 규정에 의거하여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대표이사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폐회선언

- 이상 심의안건 논의를 종료하고, 위원장이 16시 05분에 폐회를 선언함.